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-287호

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,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4년 3월 12일

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



##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개정이유

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규 개정 및 지침 내용을 반영하고 구립어린이집 위탁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여 관내 영유아 보육환경의 질과 효율성을 향상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용어 정의 변경(안 제2조)
- 보육정책위원회 보육전문가 위원 중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위촉 시 임기 조항 신설(안 제7조)
- 구립어린이집의 재위탁 시 위탁 기간 범위 조정 내용 삽입 및 보육사업 지침 등을 반영한 용어 정비 (안 제16조)
- 만 나이 통일법을 반영한 “만” 표시 삭제 및 다자녀가정 적용 기준 변경(안 제34조)

마. 제4조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육정책위원회 준말 사용에 따른  
이하 조문의 용어 정비(안 제14조, 제31조, 제36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(참조 : 가정복지과장, ☎ 450-7534, FAX: 411-1736, E-mail : [kosookok@gwangjin.go.kr](mailto:kosookok@gwangjin.go.kr)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성명(단체법인의 경우 단체명·법인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##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 치 법 규 명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

○ 성명(개인/단체 · 법인명과 대표자명) :

○ 주 소 :

○ 연 락 처 :

제 · 개정안 내용	의 견	비 고

별첨 : 서울특별시 광진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안 1부. 끝.